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규탄 및 즉각 철거 촉구를 통한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 검 토 보 고

■ 나경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22호)

2025. 9.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 목 차

|                                          |    |
|------------------------------------------|----|
| I. 제안 및 회부 .....                         | 1  |
| II. 주문 및 제안이유 .....                      | 1  |
| III. 검토의견 .....                          | 4  |
| 1. 결의안의 제안 취지 .....                      | 4  |
| 2. 결의안의 제안 배경 .....                      | 4  |
| 3. 주요 내용 검토 .....                        | 10 |
| ※ 참고자료 .....                             | 21 |
| [참고자료 1] UN해양법협약(UNCLOS) 개요 .....        | 21 |
| [참고자료 2] 서해 구조물 관련 주한중국대사관 대변인 입장문 ..... | 22 |



## I. 제안 및 회부

1. 제안자 : 나경원의원 등 28인

2. 제안일자 : 2025년 3월 27일

3. 회부일자 : 2025년 3월 28일

## II. 주문 및 제안이유

###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한민국과 협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대형 철골 구조물 '선란(深藍)' 등을 설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침해하고 양국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이 한중어업협정상 양국 간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구조물들을 설치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서해상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임을 규탄하고, 중국의 이러한 행위가 하등의 중국의 해양권익 주장의 근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정부에 해당 구조물들의 즉각적인 철거를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에 의하여 무단으로 설치된 구조물들을 군사적 목적 등 다양한 해양 관할권 확장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중국 정부에 투명한 정보공개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와 즉각 협의를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위법적인 구조물 설치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국방·외교·해양 등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즉각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해양주권 수호에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협의를 강화하여 이 사안의 외교적 해결을 추진하는 한편, 필요시 분쟁 해결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의 절차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의 우려와 요구를 반영한 강력한 조치를 추진할 것이며, 정부가 국회의 결의를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제안이유

최근 중국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 '선란'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이를 기회로 서해에 대한 자국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주장의 근거로 고착화하고 군사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중국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외교 안보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중대한 문제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의 무단 구조물 설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거를 촉구하고 서해의 대한민국 주권을 확고히 수호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함.

### Ⅲ. 검토의견

#### 1. 결의안의 제안 취지

이 결의안은 중국이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탄하고 해당 구조물을 즉각 철거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① 중국에 서해의 구조물 무단 설치가 국제법 위반행위임을 규탄하고, 중국 정부에 해당 구조물의 즉각적인 철거를 강력히 촉구하며, ② 동 구조물이 향후 대한민국 해양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중국 정부에 투명한 정보공개 및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 개시를 촉구하며, ③ 대한민국 정부에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상황을 감시하고 대한민국 해양주권 수호에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갖추 것을 촉구하며, ④ 대한민국 정부에 중국과의 외교적 협의를 통한 해결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법적 절차를 통한 대응 방안 강구를 촉구하고, ⑤ 대한민국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임.

#### 2. 결의안의 제안 배경

##### 가. 서해 구조물 설치 현황

중국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서해 잠정조치수역(Provisional Measures

Zone; PMZ)에 구조물(이하 “서해 구조물”이라 함)을 설치하였음.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은 ‘선란 1호’, ‘선란 2호’ 및 보조시설 등임. 선란 1호는 2018년 7월 경에 설치되었으며 둘레 180m, 높이 70m 규모이고, 선란 2호는 2024년 5월 경에 설치되었으며 둘레 210m, 높이 71.5m 규모임.<sup>1)</sup>

| 선란 1호                                                                              | 선란 2호                                                                               |
|------------------------------------------------------------------------------------|-------------------------------------------------------------------------------------|
|  |  |

자료: 외교부

선란 1호와 2호는 양식 규모 및 기술 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양식 수역과 양식 수량 면에서 선란 1호는 5만<sup>3</sup>, 30만 마리인데 비해, 선란 2호는 9만<sup>3</sup>, 100만 마리 규모임. 또한 선란 2호는 연어 무리의 크기, 무게, 활동 경로 및 먹이 특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정확한 양식 계획을 제공하는 등 선란 1호에 비하여 고기능을 탑재하였음.<sup>2)</sup>

1) 국회입법조사처,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관련 법적 검토와 대응 방향」, 2025.5.28.

2) 조현규, 「중국의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구조물 설치 현황 및 대응책」, 월간 국방외교저널 6월호, 2025.6.22.

## 나. 서해 구조물 위치의 법적 성격

서해 구조물은 서해의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되었음. 잠정조치수역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sup>3)</sup>이 중첩되는 구역으로, 2001년 6월 30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하 “한중어업협정”이라 함)에 따라 설정되었음.



자료: 정부 “중국, 서해 무단 구조물 잠정수역 바깥으로 빼라”...중국 측 “못 빼, 현장조사 하라”, JTBC, 2025. 4.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은 ①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공동의 보존조치 및 양적인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②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서만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③ 상대방

3)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의 범위 내의 수산자원과 광물자원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 구역임.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는 관리 및 기타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④ 상대방 국민 및 어선이 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하여 해당 국민 및 어선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으며, 그 사실 및 관련 정황을 상대방에게 통보할 수 있음.<sup>4)</sup>

#### 다. 서해 구조물에 대한 우려

현재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서해 구조물이 단순한 양식 시설을 넘어 향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중국은 서해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도 영유권과 관련한 분쟁 상황에 놓여있는데, 남중국해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2013년 이후부터 남중국해에 광대한 인공섬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음. 중국의 인공섬 건설은 남중국해 일대의 항공기 통제권을 확보하고, 군사 활동 확장 기반을 마련하며, 대규모 군사시설을 설치하여 전시에 대비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sup>5)</sup> 남중국해의 갈등을

---

4)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제7조

1.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이하 "잠정조치수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양 체약당사자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의 보존조치 및 양적인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잠정조치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는 관리 및 기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하여 해당 국민 및 어선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으며, 그 사실 및 관련 정황을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타방체약당사자는 그 통보를 존중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5) 김덕기,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미·중 갈등」, 한국해양안보포럼 월간 E-저널, 2016.5.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 입각하여 국회에서도 정부의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오고 있음.

#### < 서해 구조물 관련 국회 논의 현황 >

##### ○ 제424회(임시회) 제2차 국회 본회의(2025. 4. 14.)

- (김기웅의원) 중국 서해 구조물 관련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정부의 대응 방안 질의

##### ○ 제423회 (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2025.03.24.)

- (김석기위원) 서해 구조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정당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안철수위원) 서해 구조물 현황 확인 및 이를 통한 영유권 주장에 대한 우려 제기
- (유용원위원) 서해 구조물은 서해의 내해화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서해가 해양주권과 직결된 전략적 지역인 바 정부의 단호하고 능동적인 대응 요구
- (위성락의원)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성 제기

##### ○ 제424회 (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2025.04.23.)

- (유용원위원) 한중협력대화에 서해 구조물 문제 정식 제기 여부 질의
- (김태호위원) 서해 구조물 관련 한중어업협정 규정 위반 여부 질의
- (홍기원위원)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설치 전력에 비추어볼 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필요성 제기. 중국의 의도 확인 및 추후 영유권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대응 요구

##### ○ 제426회 (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2025.06.27.)

- (유용원위원) 우리 해양조사선 온누리호의 서해 구조물 조사 중 중국 해경 함정으로부터의 방해 발생. 남중국해와 유사한 방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호하고 원칙적 대응 필요

○ 제427회 (임시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2025.07.17.)

- (안철수위원) 서해 구조물이 한중어업협정 위반인지 여부 논의 및 비례적 대응 방식에 대한 질의
- (김태호위원) 남중국해 인공섬에 비추어 서해 구조물도 유사한 전략인지 의심이 되는 상황으로, 전략적 대책 마련 필요
- (유용원위원) 온누리호 조사 중 중국의 조직적 방해에 대하여 중국대사 항의 등 필요
- (김기현위원) 서해 구조물에 통신장비 등이 설치된다면 우리나라의 항공기 정보 노출, 해저지형 정보 노출, 잠수함 위치 노출, 방공레이더망 무력화, 실시간 도·감청 등 우려

자료: 국회회의록시스템(<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

### 3. 주요 내용 검토

서해 구조물은 해양 경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것으로, 동 구조물이 서해에서의 영유권 주장에 미칠 영향, 군사적 기지로 작동할 우려, 해양 및 군사 관련 민감 정보 유출 가능성에 관한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서해 구조물 설치를 규탄하고 즉각 철거를 촉구하는 동 결의안은 그 취지가 타당함.

#### 가. 제1호

결의안 제1호는 서해 구조물 설치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임을 규탄하고, 중국의 해양권익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에 즉각적인 철거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임.

서해 구조물 설치와 관련한 국제법으로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6)(이하 “유엔해양법협약”이라 함)과 앞서 살펴본 「한중어업협정」이 있음.

#### (1) 「유엔해양법협약」 위반 여부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는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간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확정에 관한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은 ‘경계확정의 합의에 이르는 동안, 관련국은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sup>7)</sup>

6) 유엔해양법협약은 1982년 채택되어 1994년 발효된 해양분야의 포괄적 규범으로, 우리나라는 동 협약을 1996년 11월 28일에 비준하였음. (【참고자료 1】)

7)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대항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확정

1.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간의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확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서해 구조물이 향후 중국이 서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근거할 시, 서해 구조물 설치 행위는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단호하게 ‘유엔해양법협약에 반한다’는 견해와 ‘우리의 주권적 권리 침해나 해양 권익에서의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진다면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이다’라는 견해 등이 있음.

#### < 서해 구조물 설치의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에 관한 견해 >

“ ... 중국의 잠정조치 수역 내 대규모 구조물 설치에 한중 양국의 최종 해양경계 획정 합의 도달을 위협에 빠뜨리고 방해하는 행위로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과 제83조 제3항에 반함. ... ”

— 김두영(前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사무차장),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 대응 국회토론회 자료집’, 2025. 3. 25.

#### “2. 유엔해양법협약 위반 여부: 일부 위반 근거 존재

... 중요한 것은 서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중국의 구조물 설치행위가 해당 수역에서의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가의 판단이다. 서해에서 해당 구조물 및 추가적 구조물 설치가 지속적, 반복적, 중첩적으로 벌어지고 실제로 해당 수역에서 우리 어선의 어로활동 방해, 해양환경의 파괴 또는 해양생물자원의 감소와 같이 우리의 유엔해양법협약상 주권적 권리침해나 해양 권익에의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남중국해 내해화 시도와 유사한형태로서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종 합의에 이

2. 상당한 기간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관련국은 제15부에 규정된 절차에 회부한다.
3. 제1항에 규정된 합의에 이르는 동안, 관련국은 이해와 상호협력의 정신으로 실질적인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며, 과도적인 기간동안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약정은 최종적인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관련국간에 발효중인 협정이 있는 경우,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관련된 사항은 그 협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르는 것을 위태롭게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 즉 자제 의무의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 ”

- 심상민(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국 서해 구조물 설치의 국제법적 검토」,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2025-13), 2025. 4. 30.

## (2) 「한중어업협정」 위반 여부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확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의 위반 소지가 있다면, 「한중어업협정」은 서해 구조물의 어업 질서 방해 여부와 관련이 있음.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항행 및 조업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에서의 정상적인 조업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제10조)<sup>8)</sup>, 협정에 따라 설치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는 조업질서의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양국 정부에게 권고하여야 함(제13조)<sup>9)</sup>.

따라서 서해 구조물이 해상에서의 정상적인 조업질서를 유지하지 못

### 8) 「한중어업협정」 제10조

각 계약당사자는 항행 및 조업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에서의 정상적인 조업질서를 유지하며, 해상사고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지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9) 「한중어업협정」 제13조

1. 양 계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실시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양 계약당사자가 각각 임명하는 1인의 대표 및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전문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아래 사항을 협의하고 양 계약당사자의 정부에게 권고한다.

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방계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에 허용하는 어획가능어종·어획할당량 기타 구체적 조업조건에 관한 사항

나. 조업질서의 유지에 관한 사항

다. 해양생물자원의 상태와 보존에 관한 사항

라. 양국간 어업협력에 관한 사항

(2)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부속서의 개정과 관련하여 양 계약당사자의 정부에게 권고할 수 있다.

(3)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4) 이 협정의 집행현황과 기타 이 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한다.

하게 할 정도에 이른다면 「한중어업협정」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것임.

이에 관하여 ‘서해 구조물 설치는 한·중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 사항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구조물 설치하는 협정 위반이며, 구조물 설치에 따라 사실상 조업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조업 질서 유지 의무 또한 위반이다’라는 의견과, ‘구조물 설치 행위가 해상에서의 정상적인 조업 질서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경우 한중 어업협정 위반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의견 등이 있음.

#### < 서해 구조물 설치의 「한중어업협정」 위반에 관한 견해 >

“ ... 구조물을 촘촘히 배치할 경우 구조물 주변 구역에서 우리 어선의 조업은 불가능해지며 그 결과 우리 어선에게는 잠정조치 수역에 사실상 조업 금지 구역이 설정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됨.  
... 잠정조치 수역 내 어업 관련 조치는 한중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공동위원회의 합의를 통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하는 협정에 위배된다고 봄.  
... 한중어업협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체약국의 ‘해상에서의 정상적인 조업 질서 유지’의무에도 반한다고 보임. ”

— 김두영(前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사무차장),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 대응 국회토론회 자료집’, 2025. 3. 25.

“ ... 중국의 서해 구조물이 조업질서 유지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방해가 된다면 한중 어업협정의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

— 정민정,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관련 법적 검토와 대응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제2366호), 2025. 5. 28.

“1. 한중 어업협정 위반 여부: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 이러한 구조물 설치행위가 “항행 및 조업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에서의 정상적인 조업질서를 유지”하는 데 장애를 초래할 경우에는 한중 어업협정의 규정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계양하고 있는 국기의 국적에 따라 관할권이 발생하는 기국주의가 적용되어 양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해 지도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따름이고 타국 국민 및 어선의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는 없다.”

— 심상민(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국 서해 구조물 설치의 국제법적 검토」,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2025-13), 2025. 4. 30.

### (3) 소결

서해 구조물 설치가 양국의 서해상 경계 획정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면,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또한, 서해 구조물이 해상에서의 정상적인 조업질서 유지를 위협한다면 이는 「한중어업협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음.

다만, 시각에 따라 국제법 위반 여부의 명확성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중국은 서해 구조물이 ‘국제법에 부합하며, 한중어업협정에 위반되지 않고 협정에 따른 한국의 권익에 영향이 없으며, 해당 시설에 대한 엄격한 환경 보호와 안전 조치 중언바 해양 환경과 항행 안전에도 영향이 없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sup>10)</sup>

10) 2025. 3. 26. 주한중국대사관 대면인 입장문 (【참고자료 2】)

## 나. 제2호 및 제3호

결의안 제2호는 서해 구조물의 대한민국 해양주권 침해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중국 정부에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와의 즉각 협의 개시를 촉구하는 것임.

결의안 제3호는 정부에게 구조물 설치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부처 간 협력 및 즉각적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하려는 것임.

국내에서 서해 구조물의 설치 목적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서해 구조물의 용도와 목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임.

더욱이 2025년 2월 중국 정부가 서해 구조물에 대한 우리 조사선의 조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한바<sup>11)</sup>, 중국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우리 정부의 구조물 설치 상황 점검 등 대비체계 마련이 중요한 상황임.

한편, 관련 부처인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왔으며, 향후에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11)

### 서해 구조물에 한국 조사선 접근하자... 中, 무장한 함정 2척으로 위협

(중앙일보, 2025. 6. 30.)

“ ... 한국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지난 2월 26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된 중국 대형 해상 구조물의 조사를 시도했을 때 중국 해경 함정 2척과 고무보트 3척이 방해했던 것으로 27일 뒤늦게 알려졌다.

중국 해경 함정 2척은 길이 110m, 배수량 3450t(톤)급으로 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해경 함정은 고속 모터가 달린 고무보트 3척과 함께 온누리호 주위를 에워싸고 중국 구조물에서 퇴진하도록 유도했다고 한다. ... ”

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촉구하는 동 결의안의 취지에 공감하였음.

#### 다. 제4호

결의안 제4호는 정부에 대하여 동 사안의 외교적 해결을 추진하는 한편, 필요시 유엔해양법협약의 절차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강구를 촉구하는 것임.

양국의 외교적 관계, 서해 구조물에 대한 중국의 의견, 서해 구조물의 국제법 위반 명확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결의안과 같이 외교적 접근을 우선하고 보충적으로 국제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적 대응이 바람직해 보임.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응이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의 정도에 비례하여 수위를 조절하되 지속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일차로 외교적 채널로 대응하되 추가 증설이나 침범 사태 시 강제분쟁해결 절차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음.

#### < 우리나라의 대응에 관한 견해 >

“ ... 현 상황에서 판단한다면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행위는 그 자체로는 한중 어업협정이나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의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응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이 제기하는 위협의 정도에 비례하여 그 수위를 조절하되 지속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외교경로를 통해서도 지난 3월 21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루

어졌듯이 중국의 행위가 우리의 정당한 해양권의 및 유엔해양법협약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외교적으로 항의함으로써 우리가 중국의 불법적인 관할권 및 영유권 확대 움직임에 눈감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중국의 서해 구조물이 양식어업 수행 과정에서 잠정조치수역 조업질서의 유지나 해양생물자원의 상태나 보존에 관한 악영향을 야기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가 해당 위원회 내에서 합의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무성의하게 대응하거나, 심지어는 서해 구조물을 영해나 EEZ 설정의 기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될 경우, 우리 정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해당 사안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

- 심상민(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국 서해 구조물 설치의 국제법적 검토」,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2025-13), 2025. 4. 30.

#### “향후 대응 방향

- 일차로 한중 어업협정상 잠정조치수역 관리 위반문제로 외교 및 수산 협력 채널로 대응 바람직
  - 철거 및 추가 증설 저지 방향 협의
- 추가 증설 및 한중 중간선 침범 사태 시
  - UNCLOS 강제분쟁해결 절차 상 잠정조치 신청 압력 및 추진 검토
- 국회 차원의 조치는 중간선 침범 등 중대사태 시 추진 바람직 ”

- 이용일(서울국제법연구원 부원장, 前심 코트디부아르 대사),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 자료집’, 2025. 3. 25.

#### “한국의 대응 방향

- (1)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절차 활용
- (2) 한중 해양협력대화 절차 활용
- (3) 한미일 안보 협의회 활용 ”

- 정민정,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관련 법적 검토와 대응 방향」, 국회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제2366호), 2025. 5. 28.

현재까지 정부는 외교적으로 중국에 대하여 우리의 의견을 단호하게 전달하고 있음.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 간 외교채널을 통해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받지 않도록 각급에서 중국 측에 우리 측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해오고 있음. 특히, 한중 외교장관 회담(2025. 3. 21.),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2025. 4. 23.)<sup>12)</sup>, 한중 국장급 협의(7. 1.) 등 계기 각급에서 의견을 전달하였음.

#### < 한중 논의 현황 >

-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3.21.) 결과  
(외교부 보도자료)

“조 장관은 서해에서 중국의 활동으로 인해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 해양권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며, 왕 부장은 해양권익에 대한 상호존중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 문제에 대해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하였다.”

-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개최(4.23.) 결과 (외교부 보도자료)

“강 국장은 서해상 중측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중측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양측은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동 인식하에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한중 간 해양 문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체로, 2019.12월 양국 외교장관 간 합의에 따라 신설되었음. 그간 두 차례(2021.4월, 2022.6월)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대면 회의는 2025년 4월이 최초임.

## 라. 제5호

결의안 제5호는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강력한 조치를 추진할 것이며, 정부에 대하여 국회의 결의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임.

참고로, 동 결의안과 유사한 취지를 지닌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sup>13)</sup>이 2025년 4월 23일 발의되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두 결의안은 중국 정부에 대한 서해 구조물 철거 촉구, 정부에 대한 조사 강화 및 실질적 대응책 마련 촉구, 국회의 초당적 접근 결의 등에서 그 주문의 내용이 유사하나,<sup>14)</sup> 동 결의안은 그 밖에도 국제법 위반 행위 규탄, 중국 정부에 대한 한국 정부와의 협의 개시 촉구, 우리 정부에 대한 외교적 해결 추진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 통과된 결의안과 차이가 있음.

13) 의안번호 2210076

14)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의 주요 내용

① 중국측에 구조물 철거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② 정부로 하여금 정기 해양조사 강화, 양식시설 등의 구조물에 대한 비례 조치 촉구 등 중국의 일방적 행위를 억지하고 상쇄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③ 중국의 일방적 행위로 인한 어업 질서 훼손과 조업권 침해에 대응하여, 정부는 제도 보완과 해양자원 관리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④ 대한민국 국회는 해양 권익과 국가 안보보호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정부의 실질적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결의하려는 것임.

자료: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전문위원, 2025. 6.

#### 마. 관계 부처 의견

외교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왔으며, 향후에도 계속해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는 의견임.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는 의견임.

해양수산부는 국회 차원의 노력을 존중하고, 해수부는 우리의 해양권익 수호를 위하여 관계부처들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나가겠다는 의견임.

## 【참고자료 1】 UN해양법협약(UNCLOS) 개요

### UN해양법협약

(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1. 협약의 발효와 참여

- 1982년 자메이카 몬테고베이에서 체결, 1994년 발효
- 160개국 이상 비준,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된 해양 법체계
- 한국은 1996년 11월 28일 비준

#### 2. 목적

- 해양 자원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
- 해양 환경 보호와 오염 방지
- 해양의 법적 질서 확립과 국제적인 협력 촉진

#### 3. 주요 내용

-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공해 등 해양 구역의 설정
- 무해통항권, 통과통항권 등 항해권 규정
- 해양 자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시
- 해양 환경 보호 및 해양 생태계 보존 규정
- 해양 과학 조사에 대한 규칙 제시
- 국가 간 해양 관련 분쟁 해결 절차 규정

#### 4. 제도적 장치

- 국제해저기구(ISA): 국가 관할권 밖의 심해저 활동 관리
- 국제해양법재판소: 협약 적용 및 해석에 관한 분쟁 해결
- 대륙붕한계위원회: 대륙붕 경계 설정 관련 사항 처리

## 【참고자료 2】 서해 구조물 관련 주한중국대사관 대변인 입장문

### 황해 관련 최근 한국 국내 언론에 대한 주한중국대사관 대변인 입장표명

2025-03-26 11:49

최근 한국 개별 언론과 관련 측에서 황해에 있는 중국 심해 어업양식 시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을 유의했습니다. 그 중 많은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중국 측이 설치한 관련 시설이 심해 어업양식 시설이고 중국 근해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 측이 근해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시설은 중국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중한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한국 측이 협정에 따른 권익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울러 중국 측은 이러한 심해 어업양식 시설에 대해 엄격한 환경 보호와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어 해양 환경과 항행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국 측이 관련 시설을 설치했을 때 이미 공개 보도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대해 현재 황해 정세는 안정적이며, 중한 양측은 해양 관련 이견에 대해 양호하고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한 양측이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양측은 계속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이해를 증진시키며 이 문제를 무리하게 정치화하는 것을 피하고 황해를 평화, 우의, 협력의 바다로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자료: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               |
|---------------|
| 문 의 처         |
| 02) 6788-5264 |